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612 |
|----------|------|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2016.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및 전자게시대,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안전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 표시
- 나.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에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정지화면으로 표시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위하여 상업지역·지하철역·공항·버스터미널 등의 광장 또는 전통시장 주변에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표시(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에서 정지화면으로 표시)
- 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안 제22조)
- 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공연간판 및 전자게시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2) 입법예고 (2016.12.22. ~ 2017.1.11.) 결과: 별도 붙임

※ 작성자 :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김호곤 (☎ 2133-1932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8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를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적용할 수 없다”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이를 간판으로 보지”를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표시”를 “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조의2”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

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쏘는 방법으로”를 “기체를 사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제2호”를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한다.

제7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를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로, “호의 1과”를 “호 중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을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로, “호에 적합하여야”를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중전의 제7조)제3항 중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을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로, “자치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 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지를 다음과 같이”를 “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제3조의 가로형”을 “제4조의 벽면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돌출간판을”을 “간판을”로, “된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돌출간판”을 “간판”으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를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내여야”를 “이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이내로”를 “이하로”로, “있다”를 “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를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네온류·전광류를”을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광고물”을 “따라 광고물등”으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제10조제1항제4호 중 “공중전화안심부스”를 “공중전화부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을 “공공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규로 지정되는”으로, “표시하려면”을 “최초로 표시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중전의 제3호) 단서 중 “시·구의 심의위원회”를 “시·구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를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로, “20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를 “구 심의위원회의”로,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를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를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층”을 “3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광고물”로, “이상 표시할 수 없다”를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로, “참석시켜”를 “참석하도록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를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불가피한 사정이”를 “특별한 사유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하여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을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대상·방법·절차”를 “대상·방법 또는 절차”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2.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제24조제2호 중 “것(입체형은 제외한다)”을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게시시설”을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부터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 관련)**

| 구 분      | 시설의 종류   |
|----------|--|
| 산업·교통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li> <li>•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li> <li>•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li> <li>•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li>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li> <li>• 「항공법」에 따른 공항</li> <li>•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li> <li>• 「철도법」에 따른 역</li> <li>•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li> <li>•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li> <li>•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li> </ul>   |
| 관광·휴양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li> <li>•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li> <li>•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li>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li> <li>•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li> <li>•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li> </ul>  |
| 공공·공용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 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li> <li>•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li> <li>• 종합사회복지관</li> <li>•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li> <li>•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li> <li>•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li> <li>•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li> <li>•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li> <li>•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li> <li>•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li> <li>•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li> <l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li> <li>•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li> <li>•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li> <li>•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li> </ul> |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 수수료(제27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                        | 적용 기준   | 수수료               |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 이하</li> <li>• 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li> </ul>   | 3,000원<br>1,000원  |
|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 이하</li> <li>•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li> </ul> | 20,000원<br>5,000원 |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은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게시시설을 포함) 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중 광고내용 변경은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 또는 3년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월 단위 표시기간의 비율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27조제2항 관련)**

| 광고물등                        | 적용 기준   | 수수료<br>※시·구       |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1㎡ 이하</li> <li>연면적 1㎡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li> </ul>   | 3,000원<br>1,000원  |
|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한시적 자유표시구역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10㎡ 이하</li> <li>연면적 10㎡를 초과하는 1㎡마다 더하는 금액</li> </ul> | 20,000원<br>3,000원 |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은 포함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20%를 가산하며,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40%를 가산한다.(게시시설을 포함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영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5.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등과 1년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재점검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6.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개정 2017.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7조의2 관련)**

| 광고물등          | 적용 기준                                     | 이행강제금 |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1) 연면적 3㎡ 미만                              |       |
|               | • 0.5㎡ 미만                                 | 30만원  |
|               | • 0.5㎡ 이상 1.0㎡ 미만                         | 35만원  |
|               | • 1.0㎡ 이상 2.0㎡ 미만                         | 40만원  |
|               | • 2.0㎡ 이상 3.0㎡ 미만                         | 48만원  |
|               |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
|               | • 3.0㎡ 이상 3.5㎡ 미만                         | 55만원  |
|               | • 3.5㎡ 이상 4.0㎡ 미만                         | 65만원  |
|               | • 4.0㎡ 이상 4.5㎡ 미만                         | 80만원  |
|               | • 4.5㎡ 이상 5.0㎡ 미만                         | 95만원  |
|               |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
|               | • 5.0㎡ 이상 6.0㎡ 미만                         | 110만원 |
|               | • 6.0㎡ 이상 7.0㎡ 미만                         | 130만원 |
|               | • 7.0㎡ 이상 8.0㎡ 미만                         | 150만원 |
|               | • 8.0㎡ 이상 9.0㎡ 미만하                        | 170만원 |
|               | • 9.0㎡ 이상 10.0㎡ 미만                        | 190만원 |
| 4) 연면적 10㎡ 이상 |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비고를 따른다.
-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 중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 법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법 제3조의 허가·신고를 위반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을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청장이 부과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략)</li> <li>나.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u>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u>(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li> </ul> </li> </ol> <p>4. (생략)</p> <p>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u>표시</u></li> </ol> | <p><u>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u>다음 각 호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u>같은 법 시행령</u>-----</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u>같은 법 시행령</u>에-----</li> <li>3. ----- <u>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u>----- . ----- <u>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li> </ol>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4.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u> -----</p> <p>----- <u>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제4조제1항제3호</u>-----<br/>-- <u>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u></li> </ol> |

3. ~ 5. (생략)

6.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생략)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9. 제3조의2에 따른 업소표지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자사광고에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당해 건물명 표시

벽면 이용 간판

3.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1항-----  
-----

7. (현행과 같음)

8. -----  
----- 벽면 이용  
-----

9. 제5조-----

③ -----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

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2. ----- 기체를 사용하여  
-----

3.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조제1항제3호-----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

4. 5. (생략)

④ (생략)

⑤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2. ~ 4. (생략)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한다)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3조의2의 경우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가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 -----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4.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 벽면 이용 -----  
-----.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등의 돌출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

-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 이고, 가로 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

제3조의2(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생략)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의 양쪽의 어느 한 면에 가로 45센티미터 이내, 세로 1.5미터 이내(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옆면 또는 뒷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하나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 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  
-----  
----- 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 제4조의 벽면 이용 -----  
-----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
2. -----  
-----  
-----  
-----
3. (현행과 같음)

<삭제>

그 크기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6. (생략)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돌출간판 표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는 경우 철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  
-----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간판을 -----  
-----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행과 같음)

② ----- 간판 -----  
-----  
----- 심의위원회의 -----  
-----.

제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이하여야 -----  
-----  
----- 이하로 --- 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삭제)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 -----  
----- 호 중 어느 하나와 --.

1. 2.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 (생략)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  
-----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

② -----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호의 기준에 따라야 --.

1. 2. (현행과 같음)

3. 구청장은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

----- 구청장 -----  
-----.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치

2. 3. (생략)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따라 광고물등-----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 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2. 3. (현행과 같음)

4. 자동심장제세동기(AED),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안심부스

5. (생략)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또는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의 장 등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시·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하여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계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행사내용에 한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또는 제4항에 따른 가림막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  
----- 공  
중전화부스

5.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

1. 공공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규  
로 지정되는 -----  
----- 최초로 표시하려  
면 -----.

<삭 제>

2. -----  
-----  
-----  
-----  
----- 시·구심의위  
원회의 -----  
-----.

③ 제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계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원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생략)

4.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거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생략)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2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계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  
----- 다음 각 호와 --.

1.·2.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기준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  
----- 따라 -----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생략)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  
----- 30센티미터 -----.

2. (현행과 같음)

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생략)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 구 심의위원회의 -----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 -----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

2. ----- 3층 -----.

3.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른 광고물--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삭 제>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② (생략)

<신설>

제2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하여도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신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 참석하도록 하여 -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 특별한 사유가

⑤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 대상·방법 또는 절차 - 심의위원회의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생략)

② (생략)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 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 물등은 다음과 같다.

1.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세로형 간 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 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계 시시설

제25조(광고물등의 교육) ① 시장은 옥외광고 의 수준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 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수료는 공 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별로 표시면적 1제곱 미터까지는 3,000원을, 1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면적은 1제곱미터당 1,000원을 가산한 다.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 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 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해당 자치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 다음 각 호와 --.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 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
3. ----- 게시 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 게시대

제25조(광고물등의 교육) ① -----  
-----  
- 옥외광고사업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 단 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 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 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

<신 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  
-----  
-----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개정안은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은 없음

**4. 작성자**

김호곤 전문관 (2133-1932)

[별지 제2호서식]

| 입법 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                                    |   |  |
|--|---|--|
| 의견제출자  | 제출 의견   | 조치 내용  |
| 한국옥외광고<br>미디어협회  |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br>제2항제1호 “영 제4조제1항제1<br>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영 제4<br>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로 개정         | ○ 반영<br>-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br>“타사광고” 정의를 인용하는 것<br>으로 “나목” 건물의 4층 이상<br>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br>광고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 한국옥외광고<br>미디어협회,<br>한국전광 방<br>송협회                      |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br>제3항제1호나목의 “제3조제1항<br>제4호”를 삭제  | ○ 반영<br>-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는 자사<br>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br>제3조제1항제4호 타사광고를<br>삭제  |
| 서울특별시옥<br>외광고협회,<br>한국 전광방<br>송협회, 한국<br>옥외광고미디<br>어협회 | ○ 제3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br>제1항제4호가목의 세로크기는<br>15미터 이하를 삭제   | ○ 반영<br>- 세로크기의 이중 규제로 15 미터<br>이하를 삭제 반영  |
| 서초구  | ○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br>제3항제3호 “점멸 또는 동영상의<br>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br>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br>다”를 삭제    | ○ 미반영<br>-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br>로 광고물이 포출될 경우에 시민<br>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거나 도시<br>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미반영                                |
| 시민소통담당관  | ○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br>표시방법) 보도상영업시설물인<br>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br>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br>설물로 지정         | ○ 반영<br>-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br>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br>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br>또는 구두수선대를 편익시설물로<br>지정하여 시정홍보 등을 표시할<br>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한국전광방송<br>협회   |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제1항에<br>“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br>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br>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br>기능에 포함 | ○ 반영<br>- 시민의 생활환경 침해 및 도시경<br>관을 고려하여 자유표시구역 안<br>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br>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기<br>능에 포함                         |